

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12.1.~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 중심 동절기 건설현장 대상
 - 발주자로서의 책무, 동절기 안전보건 수칙 집중 점검
- 지방노동관서장이 발주 공공기관장 대상 재해 예방 지도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1.~12.5.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 '25.10.29.~11.4. 1차(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 테마), 11.12.~11.18. 2차(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대상)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 바 있음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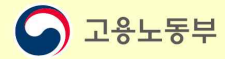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강승훈 (044-202-89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법 제67조
단계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

법 제68조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법 제70조
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법 제71조
설계 변경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법 제73조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2025-건설안전실-1218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1 동절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개구부·단부에서 떨어짐



-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개구부 덮개 설치
- ✓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무너짐



-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 콘크리트 분산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 ✓ 타설 중 출입금지, 이상 발견 시 대피

갈탄에 의한 중독·질식



- ✓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 ✓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용접 작업 중 화재



- ✓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 ✓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2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동절기
안전보건 길잡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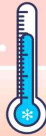


동절기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위험요인	핵심점검사항	확인
떨어짐	● 추락위험장소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	
	●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 작업자는 항상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체결	
무너짐	●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준수	
	● 콘크리트 분산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자 출입금지, 이상 발견 즉시 대피	
중독	●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 밀폐공간·지하작업장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화재	● 용접·용단 불티가 튀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 용접방화포 또는 비산방지덮개	
	●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한랭질환	●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휴식) 제공	
	● 한파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및 작업시간 단축 ● 한파경보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및 최소화	
	● 한랭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에 반드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치하세요.

*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주의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예상될 때 등

한파경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예상될 때 등

※ 세부사항은 기상청 시행령 [별표1] 특보기준 참고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 ▶ 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착용
- ▶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 *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



따뜻한 쉼터 (휴식)

-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 * 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
- ▶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따뜻한 물

- ▶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 ▶ 한파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
- ▶ 한파경보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119 신고

- ▶ 한랭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신고
- ▶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위험



35℃ 이하

한랭질환자 발생



의식 없음
호흡 없음

119
구조
요청



병원으로 이송

*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

- ▶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
- ▶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민감군이란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이 해당

중작업이란 열량소비가 많은 삽·망치·툼·곡괭이·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

*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한랭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저체온증	▶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 (경증) 인지장애 ▶ (중등도) 의식소실, 부정맥, 호흡저하 ▶ (중증) 혼수, 심장정지	• 체온 35℃ 미만 /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동상	▶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피하조직이 동결손상된 상태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 ▶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기
 동창	▶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 심한 경우 울혈물집·괴양 등 발생	•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기 •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 •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
 침족병/침수병	▶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띰 ▶ 심할 경우 물집·괴사·괴양 발생	•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하기 •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

※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참고

* 겨울철 질식·미끄러짐 사고 예방

건설현장 갈탄 사용시 질식위험 예방



- ▶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세요.
-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빙판길 미끄러짐 예방



- ▶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 ▶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